

動力資源部告示 (第81 - 220号)

燃料油 輸入추천대상者

石油事業法 第17條 및 輸出入期別公告총칙 第3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해 石油事業法 対象品目에 대한 輸入要領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1年 12月 18日
動力資源部 長官

3. 輸入추천대상자중 燃料油輸入추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燃料油는 石油類精製業体, 韓國石油開發公社 또는 大需要處에 한함. 다만 石油가스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CCCN. 2711)는 가스事業法 第3條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도 수입할 수 있음.

附 則

1. 이 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動力資源部告示 (第82 - 4 号)

石油安定基金징수에 관한 告示

石油事業法시행령(이하“令”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低價原油導入으로 國內石油製品 價格安定에 기여한데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石油安定基金을 다음과 같이 징수할 것을 告示한다.

1982. 1. 16
動力資源部 長官

導入原油 1 배럴당 美合衆國 通貨 0.3달러에 선택후 30일의 換率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동금액이 상각되는 시점까지 당해 精油會社로 부터 動力資源部 告示 제81-218호에 의한 安定基金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이 告示에서 低價原油導入社라 함은 81. 4. 19부터 81. 11. 28까지의 기간에 통관된 原油의 복합평균단가가 동기간중의 國內도입 복합평균단가 보다 낮은 精油會社를 말하며, 이 경우 복합평균단가는 實도입선복인도 가격 기준으로 프리미엄 및 中개수수료를 포함하되 低質低價原油인 베네수엘라產 Menemota/Mara 原油 및 Wafra原油를 제외한 價格으로 한다.

附 則

이 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음

1. 今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低價原油導入社의 低價原油導入에 대한 장려금은 81. 4. 19부터 81. 11. 28까지의 기간에 통관된 低價